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퇴직 후 6개월 경과한 정신장애 판정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82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5.
3. 회부연월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¹⁾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²⁾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보상금)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3조(장애보상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u>
<u>⑤</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⑥</u> -----제5항----- ----- ----- -----.

1)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 참고자료 장애보상금 개요 참조.

□ 현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애보상금³⁾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임.⁴⁾

군인은 퇴직 후 본인 신청에 의해 군 병원 입원 후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기한은 공무와 부상 또는 질병과의 시간적 인과관계 입증 등을 고려 전역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보상금 규정]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⁵⁾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 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 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각 목 생략)

3) ① **병사 등**(법 제33조제1항)의 경우 전상, 특수직무공상 외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인 경우 공상·비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등급 1~3급) 장애보상금 지급 * 4급은 공상만 지급

② **간부**(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음

* 간부 일반장애는 공무상요양비, 단체보험, 상이연금 등과의 이중보장이 가능하므로 '20. 6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두9023 판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 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사로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발현 및 진단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군 복무 중 전역 이후 짧은 기간 내 장애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 복무 중 입은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국가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에 대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이 지급되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5)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 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적용범위는 의무복무를 한 병사 등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복무로 인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장애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참고로,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4096)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퇴직 후 1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방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24년 11월 26일)되어 계류 중에 있음.⁶⁾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추후 PTSD 등이 발현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자의 PTSD 질환에 한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과 함께 그 밖의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 곤란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하여는

6) 정신장애인 경우 1년 또는 18개월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그 뒤에 확정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많은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어 계류되었음.

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 3. (생략)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

③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5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1호 또는 제2호의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⑤ -----제4항-----

-----.

부칙

제1조(시행일) -----
-----1년-----
-----.

제2조(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

	<u>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	-----------------

문 의 처
02)6788-5304

※참고자료 1. 장애보상금 개요 및 관련 현황 등

○ 장애보상금 개요

- (장애보상금의 의의) 전역 당시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심신장애 등급 및 장애보상금 지급 절차)
 -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군 병원 입원 후 의무조사위원회 조사(의무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음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 등급표)에 근거하여 1~11급까지 판정
 -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장애의 공상·비공상 여부,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인 지를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및 등급을 확정함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장애보상금 등급(1~4급)을 결정
 - 심신장애 1~2급 → 장애보상금 1급, 심신장애 3~5급 → 장애보상금 2급, 심신장애 6~7급 → 장애보상금 3급, 심신장애 8~9급 → 장애보상금 4급
 - 퇴직자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군 병원 입원 후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판정기한은 진료기간 및 의무조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간부의 경우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음
 - * '20.6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간부 일반장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병사의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인 경우 공상·비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20년(6월~*)	'21년	'22년	'23년	'24년
지급인원 (명)	223	484	458	323	287
전상	-	-	-	-	4
특수직무공상	-	6	7	5	8
그 밖의 심신장애	223	478	451	318	275
지급액 (백만 원)	4,940	10,360	10,010	7,276	7,251
전상	-	-	-	-	287
특수직무공상	-	318	364	214	433
그 밖의 심신장애	4,940	10,042	9,646	7,062	6,531

*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일('20. 6. 11.) 이후 전역한 인원 기준임

○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세부 표)

구분	장애보상금 등급	공상 여부**	간 부	병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배수	
일반장애 (그 밖의 심신장애)	1급	공상 및 비공상	해당없음	9배 (51,390,000원)
	2급			6배 (34,260,000원)
	3급			4.5배 (25,700,000원)
	4급	공상	해당없음	3배 (17,130,000원)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1.88배)	1급	공상	16.92배 (96,610,000원)	
	2급		11.28배 (64,410,000원)	
	3급		8.46배 (48,310,000원)	
	4급		5.64배 (32,200,000원)	
전상 (일반장애×2.5배)	1급	공상	22.5배 (128,480,000원)	
	2급		15배 (85,650,000원)	
	3급		11.25배 (64,240,000원)	
	4급		7.5배 (42,830,000원)	

* 비무장지대·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특수전술 임무수행 등과 관련된 부상·질병

** 1~3급은 공상·비공상 모두 지급하며, 4급은 공상인 경우에만 지급

*** '24년 기준 571만 원

○ 장애보상금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현재 2024.2.28. 선고 2020헌바320 전원재판부 결정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크다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서 전역 당시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그 뒤에 확정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많은 혼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전역 후에 확정된 장애에 대하여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퇴직 후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